

접 수	의안과 - (20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급식비 지출내역 공개에 대한 학교 급식법 개정
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7 년 7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박지수

주 소 :

전화번호 :

소 개 의 원 : 박지수 (인) 외 33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성명 : 박지수
건명	급식비 지출내역 공개에 대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7년 7월 30일
<p>소개의견</p> <p>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15회 정기회의 청소년권익위원회입니다.</p> <p>제 15회 정기회의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급식비 지출내역 공개에 대한 학교 급식법 개정안>입니다.</p> <p>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대부분 급식비를 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유통과정에 급식비가 어떻게 쓰이는 지는 쉽게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해 급식 비리를 저지르는 학교가 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5일 연합뉴스에 보도된 바로는 계약된 단가의 식재료보다 낮은 가격의 제품을 몰래 들여오거나 납품업체와 유착해 식재료를 외부로 빼돌린 학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런 급식 비리 사건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였고,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저희는 이런 급식 비리 사건의 원인이 비용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급식비의 지출 과정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p> <p>청소년의회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p> <p>다음과 같은 법안을 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p> <p>학교급식법 제15조</p> <p>④학교 급식 운영 시 급식비 지출내역을 학생과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p> <p>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물품의 종류 (물품분류는 한국영양학회 식품군분류에 따른다.) 2. 물품의 양 3. 지출내역 4. 급식비 예산 총액 	

청원서

1. 제안이유

학생들은 학교급식을 먹으며 급식비를 냅니다. 급식비, 즉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는다는 것은 학생 또한 일종의 소비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소비자로서 학생은 소비자기본법 제 2장의 제4조의 2항에 따라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학교 급식비 지출내역 명시에 대해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몇몇 학교에서는 이러한 점을 악용하며 급식 비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4월부터 전국 학교 급식 관련 업체 2천 4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예산 부당집행이 132건이나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2017년 2월 5일 대전일보에서 대전지역 학교 급식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패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된 적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급식 비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희는 학생들이 낸 급식비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급식비의 지출내역이 항상 공개된다면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쉽게 그 지출내역을 보고 본인이 낸 급식비가 어떤 과정으로 쓰이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이 개정안 시행으로 인해 급식 만족도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올 수 있다는 기대효과와 학교급식의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학교급식의 지출 등에 대한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리와 기회를 가짐으로써 최종적으로는 학생들이 학교에 대해 자유롭고 자주적인 주장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며, 소비자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골자

-신구문대조표-

현행법	개정안
<p>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p> <p>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제15조(학교급식의 운영방식)</p> <p>①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을 직접 관리·운영 하되,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식재료의 선정 및 구매·검수에 관한 업무는 학교급식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하지 아니한다.</p> <p>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무교육기관에서 업무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p>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위탁의 범위,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 그 밖에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학교 급식 운영 시 급식비 지출내역을 학생과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

명시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물품의 종류 (물품분류는 한국영양학회 식품군분류에 따른다.)

2. 물품의 양

3. 지출내역

4. 급식비 예산 총액

청원인 성명 : 박지수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